

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인재 판단기준

1. 비수도권 지역인재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*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,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

□ 비수도권 지방대학 범위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* (예시)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고려대 세종캠퍼스,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등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

□ 그 외의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2. 이전지역인재(부산)

□ 이전지역인재 정의

-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(대학원 이상 제외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
 - *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,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을 따름
 - * 부산 소재 고교 졸업 후 타 지역에서 대학을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한 자는 제외
 - *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우리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

□ 이전지역(부산) 학교의 범위

- 부산광역시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(부산)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 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 학교 등의 본교
 - 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캠퍼스)

- 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- 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 *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-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 - ㉠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- ㉡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- ㉢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- ㉣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□ 이전지역(부산) 인재의 범위

-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아래와 같음
 -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 - ㉠ 이전지역에 위치한 「고등교육법」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 - 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 -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 - ㉢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- ㉣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 - ㉤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
- ㉠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㉡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-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㉢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㉣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판단기준 안내

◆ 아래의 질문에 따라 본인의 지역인재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질문1. 본인은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입니까?

* 대학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

- ① 예 [하단의 기준 A에 따라 판단] ② 아니오 [질문 2로 이동]

질문2. 본인은 대학졸업(예정)자가 아닌 대학재학·휴학·중퇴자 입니까?

- ① 예 [하단의 기준 B에 따라 판단] ② 아니오 [하단의 기준 C에 따라 판단]

지역인재 판단기준

기준 A) 대학졸업(예정)자 : 본인의 **대학교 소재지 기준**으로 판단하여 선택

⇒ 부산소재 : **이전지역인재** & **비수도권지역인재**
 부산외 비수도권 소재 : **비수도권지역인재**
 수도권소재 : 미해당

기준 B) 대학재학·휴학·중퇴자 : **아래 <표>**에 따라 판단하여 선택

대학 소재지		부산 외 지역		
		부산	비수도권	수도권
고등학교 소재지	부산	이전지역인재 & 비수도권 지역인재	이전지역인재 & 비수도권 지역인재	이전지역인재
	부산 외 지역	비수도권 지역인재	비수도권 지역인재	미해당
	비수도권	비수도권 지역인재	비수도권 지역인재	미해당
	수도권	비수도권 지역인재	비수도권 지역인재	미해당

기준 C)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: **고등학교 소재지 기준**으로 판단하여 선택

⇒ 부산소재 : **이전지역인재** & **비수도권지역인재**
 부산외 비수도권 소재 : **비수도권지역인재**
 수도권소재 : 미해당

※ 위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인재 기준은 관계법령 등에 따름

- **이전지역인재**: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- **비수도권 지역인재**: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